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75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68,438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경 대구 달서구 C 지하상가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위 지하상가에는 원고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D호가 그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상가 부분이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위 지하상가는 전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지하상가 전체 전기요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고, 원고 이외의 위 나머지 상가에 대한 세입자들의 전기요금을 피고가 받아 원고에게 주면 원고가 자신의 부담분을 보태어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다른 세입자들의 전기요금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6. 6.부터 2011. 9.까지 64개월 동안 전체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피고가 받고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다른 세입자들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합계액은 103,768,438원이다.

2. 판 단

전기요금이 지하상가 전체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하상가에 있는 상가를 소유한 원고나 다른 상가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이 그 사용분대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다른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전기요금 전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피고가 아니라 다른 세입자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다른 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과의 사이에서 지급위탁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서 원고를 위한 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앞서 본 관계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과 피고 사이에서 임차인들이 제3자인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지급채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차윤제